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신설〉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5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3호)	4
2.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준수사항(안 제50조의4, 제80조의3)	7
3. 벌칙·과태료(제148조의3제1항·제2항, 제152조제1호의3, 제160조제1항 제10호)	15
4. 페달오조작방지장치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안 제93조제1항)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5.
3. 회부연월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급증과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 반응시간 지연 등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조작 오류 기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36% 증가하였고, 특히 정지·출발·주차·후진 등 저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페달 착오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국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중 약 24~30%가 인지·판단·조작 기능 저하로 인한 실수형 사고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관측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또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함.

반면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와 상황 판단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고위험군에게는 안전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시행 중임. 영국·독일 등도 고령층 대상 기능검사를 강화하거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장치 장착 시 검사주기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동차 의존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편으로, 단순한 면허 제한이나 운전금지는 이동권 침해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험군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안전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운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맞춤형 면허관리 체계가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동 장치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안 제80조의3, 제87조제5항, 안 제50조의4 신설 및 안 제148조의3, 제152조, 제160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3호)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57)¹⁾의 의결을 전제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4. (현행과 같음) 3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7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4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2029년 이후 제작·수입되는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²⁾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³⁾⁴⁾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5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은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음.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1244호) 예고기간 2025. 10. 24. ~ 2025. 12.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5년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후 급발진, 저속 급가속을 회피하고, 주행도로의 규정속도 위반 및 4천rpm 이상의 과속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기능

기능	내용
페달 오조작 방지기능	①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로 주행시 빠르고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 억제 ② 15km/h이하로 후진시 빠르고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 억제 ③ 어린이 보호구역 등 30km/h 구간에서 급가속 억제

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 및 화물·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동변속기 장착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 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65호,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자동차 및 화물·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2. 제2조제66호,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4) 참고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유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국제기준(UN R175 ACPE00시리즈, 2025. 5. 12.) 발효에 따라 국내 기준과 조화를 시키기 위함서임. (출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문별 제개정 이유)

기능	내용
속도제한기능	차량 내 탑재된 단말기를 통해 네비게이션(Tmap활용) 속도 제한정보와 차량의 CAN정보를 실시간 통합 분석→차량 CAN과 속도조절장치(가속, 브레이크 등)를 제어하여 도로에 적합한 안전,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행할 수 있게 함

자료: 경찰청

개정안 제2조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정안 제80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57)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준수사항 (안 제50조의4, 제80조의3)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0조의3),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1항).

그리고 개정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0조의4제5항), 개정안의 부칙은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80조의3(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시·도경찰청장은 고령운전자(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부여하거나 기존 운전면허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현행	개정안
<신 설>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 전환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전환·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현행	개정안
	<u>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3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u>② 제80조의3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u> <u>2. 폐차하는 경우</u> <u>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현행	개정안
	<u>유에 해당하는 경우</u> ④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 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4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가 2025년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1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141명에게 설치했고, 2025년 7월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운영을 실시했으며, 9월까지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 71건을 차단함. 그리고 2025년 12월에는 2차 지원 사업 730명을 모집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의 현황

구 분	1차 지원사업	2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2025년 4월~5월	2025년 12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141명	730명
운영현황	7월~9월 오조작의심 71건 차단 (오조작의심 인원 22명)	진행중

자료: 경찰청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형태



자료: 경찰청

개정안 제80조의3 및 제50조의4를 통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고령운전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10월에 입법예고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더라도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부착되도록 한 반면, 2028년 이전에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해당 차량들이 약 10년 ~ 20년 가량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통해 2028년 이전에 제작·수입되어 페달오조작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보유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 제80조의3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면허를 받게 되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벌칙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규정하는 형식 측면에서도 유사 입법례인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1항을 고려하면, 개정안 제80조의3제1항과 같이 시·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일정 요건 하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그리고, 페달오작동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기준에 받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제50조의4제5항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5년 10월에 입법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7의10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⁶⁾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청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5)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령’에 의한 규제보다는 ‘인지·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경찰청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범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는 달리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근거가 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이 있어 해당 법령 내에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만을 위한 별도 법률 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⁷⁾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제50조의4제5항과 관련하여 신차에 2029년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무대상 및 성능기준 등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개정 중이고, 기존차에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튜닝 기준 마련 등 제도화⁸⁾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50조의4제5항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 ② (생략)

③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략)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8)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튜닝에 대해 규정

3. 벌칙·과태료(안 제148조의3제1항·제2항, 제152조의제1호의3, 제160조제1항제10호)

개정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152조제1호의3)에 처하도록 하는 등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48조의3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제152조제1호의3, 제160조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3(벌칙) ① <u>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148조의3(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u> <u>-----.</u> 1. <u>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u> 2. <u>제5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u>
② <u>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현행	개정안
<u>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u>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신 설>	<u>당하는</u>----- -----. 1.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u>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u> 2. 제5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u>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제152조(벌칙)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5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u>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u>

현행	개정안
2. ~ 6.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신설> ② ~ ④ (생략)	<u>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u> 2. ~ 6.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u>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된 벌칙, 과태료 규정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양태의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과 개정안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 비교**

현행법	개정안	행위	처벌수준
§148의3 ①	§148의3 ①2	음주운전 방지장치 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침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48의3 ②	§148의3 ②2	음주운전 방지장치 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152 1의2	안§152 1의3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160 ①9	안§160① 10	음주운전 방지장치 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안을 통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제도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등 강력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대다수의 사람은 나이가 들고 고령이 되어 일정 정도 인지력이 저하되는 반면 음주운전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보이는 측면과 고령 등의 사유로 인지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처분의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이 범죄 행위인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여 일반 고령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설치 기간(결격기간과 동일, 최대 5년⁹⁾)의 제한이 있는 반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면허는 기한 없이 운행기록 제출 및 정기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9)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결격기간은 최대 5년임

고 막대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페달오조작방지장치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안 제93조제1항)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대상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을 통해 취소·정지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에 페달오조작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규정과 같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더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높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은 현행법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운전면허’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이 개정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현행법상의 조건부 운전면허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이미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능력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3조제1항에 따른 처벌 규정도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입법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¹⁰⁾.

문 의 처

02) 6788-5345

10) 10)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 ② (생략)

③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략)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